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2017년도-4차 임시이사회의(록)

* **일　　시** : 2017. 12. 8.(금요일), 15:30 ~ 16:30
* **장　　소** : **유은복지재단 문화관 회의실**
* **임원총수** : 이사 7명, 감사 2명
* **참석임원** : 이종만 대표이사, 박종공 이사, 임성진 이사, 장석준 이사, 김윤애 이사
* **불참임원** : 강성진 이사, 고유나 이사, 이윤수 감사, 권헌서 감사

Ⅰ부　예 배

* **일　　시** : 2017. 12. 8.(금요일), 15:30 ~ 15:50
* **인　　도** : 이종만 목사
* 찬송가 212장을 다같이 부른 후, 장석준 장로로 기도케 하다.
* 이종만 목사가 성경 누가복음7:1-10을 봉독하고 '멋진 믿음의 사람' 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한 후 임성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다.

Ⅱ부　회　의

* **일　　시** : 2017. 12. 8.(금요일), 15:50 ~ 16:30
* **사　　회** : 이종만 대표이사

1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: 권남규 사무국장이 임원 총 9명 중 이사 5명이 출석하였음을 보고하자, 정관 제26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에 의거 의결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종만 대표이사가 인사 말씀을 한 후,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(이하 '본 재단'이라 한다.) 2017년도 4차 임시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2. 경과보고 : 권남규 사무국장이 2017-3차 정기이사회 이후 본 재단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[별첨자료 1]의 서면 및 구두로 경과를 보고하다.

3. 안건상정 : 이종만 의장이 본 재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의

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자,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다.

제 1호 : 2017년 시설일반회계(시도보조금)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· 의결의 건
제 2호 : 2018년 시설일반회계(시도보조금) 예산안 심의 · 의결의 건
제 3호 : 임원(대표이사 · 이사)개선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제 4호 : 자산(기본재산) 취득 심의 · 의결의 건
제 5호 : 기타 안건 심의 · 의결의 건

4. 심의 · 의결사항

1) 안건 제 1호 : 2017년도 시설일반회계(시도보조금)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· 의결의 건

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미리 나누어 준 [별첨자료 2]의 2017년도 시설일반회계(시도보조금) 추가경정 예산안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 설명을 하게한 후 참석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박종공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2) 안건 제 2호 : 2018년도 시설일반회계(시도보조금) 예산안 심의 · 의결의 건

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미리 나누어 준 [별첨자료 3]의 2018년도 시설일반회계(시도보조금) 예산안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 설명을 하게한 후 참석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박종공이사의 동의와 장석준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3) 안건 제 3호 : 임원(대표이사 · 이사)개선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종만 의장이 [별첨자료 4]의 본 재단 대표이사인 이종만씨가 2018년 1월 2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(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이종만씨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임성진 이사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케 하다.) 심의한 결과, 이사 이종만씨를 임기 3년인 2018년 1월 21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본 재단 대표이사로 연임할 것을 장석준이사의 동의와 임성진이사

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이어서 이종만 의장이 본 재단 이사인 박종공씨가 2018년 1월 2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(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박종공씨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다.) 심의한 결과, 이사 박종공씨를 임기 3년인 2018년 1월 21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본 재단 이사로 연임할 것을 장석준이사의 동의와 임성진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4) 안건 제 4호 : 자산(기본재산) 취득 심의 · 의결의 건

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미리 나누어준 [별첨자료 5]의 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선편의식품 제조시설 증축으로 기본재산(토지: 금155,797,700원· 건물: 금1,724,609,600원)의 취득에 관하여 권남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박종공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5) 안건 제 5호 : 기타 안건 심의 · 의결의 건

이종만 의장이 상정한 기타 안건 심의 ·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심의를 마칠 것을 임성진 이사의 동의와 박종공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6. 회의록채택 : 이상으로 심의 · 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권남규 사무국장으로 낭독케 하니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하자는데, 박종공 이사의 동의와 임성진 이사의 재청으로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7. 폐회선언 :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 · 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을 장석준 이사의 동의와 김윤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, 이종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* **기 록 자** : 사무국장 권 남 규 (인)

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.

2017. 12. 8.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
대표이사 이 종 만

이 사 박 종 공

이 사 임 성 진

이 사 장 석 준

이 사 김 윤 애